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장비 조건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6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인천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사무실·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 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0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도지사가 1)가 및 사)에 대하여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별표 6 제1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의 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가)·2)다)·5)가)·5)나)에 대하여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2)다)·5)가)·5)나)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별표 6 제2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호가목1)가), 2)다), 5)가)에 대하여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호가목1)가), 2)다), 5)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별표 10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 가스 저장소 사용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10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2) 허가취소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본문, 별표 6 제1호가목7) 본문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별표 6 제1호가목7) 및 별표 6 제2호가목3)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